#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1128 판결 모욕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5고정1128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윤섭(기소), 오연택(공판)

판결선고 2015. 9. 18.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의료원 B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C은 'D' 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현직 의사들 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위하여 개설되어 현재 회원 수 약 87,000여 명인 인터넷 사이트 E의 각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10:50경 이천시 경춘대로 2742에 있는 이천의료원 B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원에서 고용 의사들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D의 2억 교육비에 대해 사실 받는 놈도 미친놈이지만 내고 하는 놈이 더 미친놈이다. D 순진한 의새들 많아'라고 올린 글 아래에, 피해자에 대하여 "학교 다닐 때부터 똘아이로 유명한 놈"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C의 추가 고소장(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하는 동료 의사를 심정적으로나마 돕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댓글 작성 경위와 문맥,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표현으로 고소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임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의 병원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 인으로부터 횡포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동료 의사에 대한 심정적인 지지 차원에서 이 사건 댓글을 단 것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나 대상에 대한 비판이 아닌 단순히 고소인에 대한 경멸, 모욕 적인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판시 댓글이 불의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판사 김선아